

[양형위원회 제118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18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2. 8. 4.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심의
 - ②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심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제8기 하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 분석
- 2022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8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관세법위반범죄의 설정범위 심의

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1) 관세포탈범죄

- 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위반죄
- 나)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위반죄
- 다) 관세법 제270조 제5항(부정관세환급) 위반죄
- 라)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2) 무신고 수입 등 범죄

- 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무신고 수입)·제2호(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 위반죄

나)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무신고 수입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3) 무신고 수출 등 범죄

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무신고 수출·반송), 제2호(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 위반죄

나)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무신고 수출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4) 밀수품 취득 등 범죄

가)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출입품(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제270조)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위반죄

나) 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5)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나.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1)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 등),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 제275조의3(납세신고 명의대여), 제275조의4(보세사 명의대여), 제276조(허위신고 등) 위반죄

2) 다른 법령상 관세 관련 범죄[주한미군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자유무역지역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

3)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

다.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의

1) 금지물품 수출·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2)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3) 심의 내용

- 금지물품 수출·수입죄, 가격조작죄는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

5. 관세법위반범죄의 유형분류 심의

가. 전문위원단 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유형분류안

01¹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 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2항

가.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무신고 수출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가.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나. 심의 내용

- 관세법위반범죄의 유형분류는 전문위원단 다수의견대로 정함

6.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설정범위 심의

[정보통신망법 설정범위 심의]

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 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 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 마)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나.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 나)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

다.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
- 나)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전송,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공개전시)
- 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 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영리목적 광고 전송시 금지조치 위반)
- 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전송)
- 바) 심의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3호, 제74조 제1항 제4호, 제74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는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차회 논의 하여 확정하기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설정범위 심의]

라.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 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 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와 같이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 차)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 카)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타)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

- 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 과)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 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 거)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마.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 나) 심의 내용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는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

[위치정보법 설정범위 심의]

바.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 나)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사.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 나)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 다) 심의 내용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는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통신비밀보호법 설정범위 심의]

아.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의

-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 다) 심의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죄는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7.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유형분류 심의

가.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 와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범죄’ 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되, ③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나. 구체적인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음

01¹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02¹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의 유형 분류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다음 회의에서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유형분류를 함께 논의하기로 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8. 다음 회의(제119차 회의) 일정

- 일시: 2022. 9. 19.(월) 오후
- 장소: 대법원 회의실
- 안건: 관세범위반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